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42

제출연월일 : 2015. 5. .
제 출 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조항 신설(안 제24조제11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미반영

- 사 유 :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할 것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3항에서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수 없어 미반영하였음.

라. 입법예고 : 2015. 3. 30. ~ 2015. 4. 20.(의견 없었음)

6. 관련되는 법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화재·도난 기타”를 “화재·도난·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1월”을 “1개월”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2월”을 각각 “12개월”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을 요할”을 “요양이 필요할”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3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6회-본회의제2차부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 . 비상근무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 비상근무등) ① ---------- ----- 화재·도난·그 밖에 ---------- ---------- ----------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 ---------- 그 밖----------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해당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가일수----------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 1개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연도 휴직기간 / 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범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요양이 필요할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연가일수----------.

현 행	개 정 안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외여행) ---------- 범위----------.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 시행에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울산중구017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김정응	전화번호	052-290-3162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총무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조항 신설(안 제24조제11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총무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개선의견)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3항에서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근거할 때 영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015년 04월 06일

총무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근 거 법 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2)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5. 5. 6.(수)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5. 5. 11.(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5. 5. 14.(목)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3. 주요내용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조항 신설(안 제24조제11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

4.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서대성)

❍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제공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 중 일부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

❍ 새롭게 신설되는 제24조 11항의 경우

- 재직기간이 20년 미만도 휴가기간이 10일이고, 30년 미만도 휴가기간이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휴가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와 타구·군의 휴가기간은 며칠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